

입찰 공고문

공고 번호: PR-25097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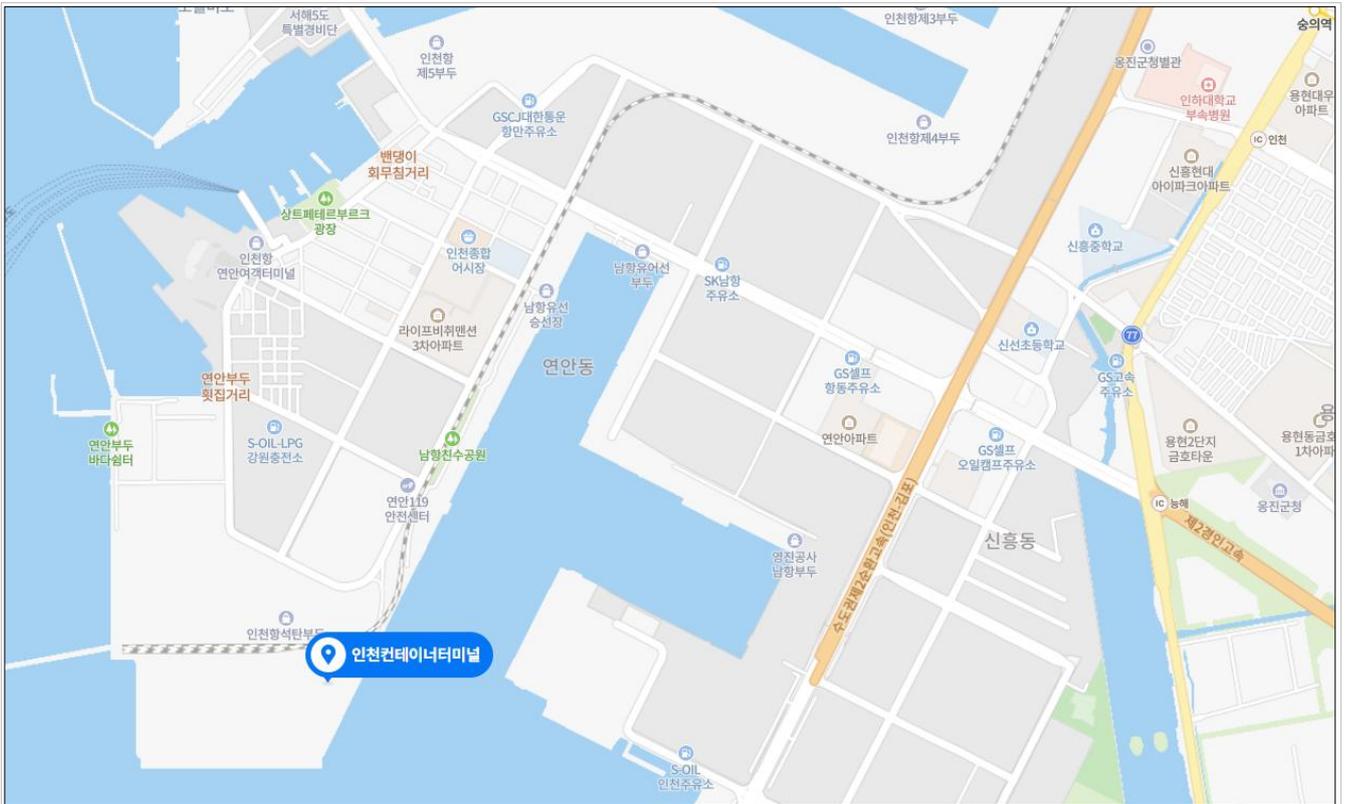
Quay Crane 2-3 호기 Catenary 및 Trolley Wheel 제작 및 교체 업체 선정 입찰 공고

2025년 12월 1일

인천컨테이너터미널(ICT) 내 운영하고 있는 하역이동장비(Quay Crane)의 Catenary 및 Trolley Wheel 제작 및 교체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.

1. 위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8 번길 135(항동 7 가) 내

2. 약 도



3. 입찰 일정

(1) 공 지 기 간 : 2025년 12월 1일(월) ~ 12월 9일(금)

: 발주처 홈페이지 www.psa-ict.co.kr 자료실에서 세부사항 참조

(2) 입찰 마감 :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까지

- (3) 입찰 위원회 : 2025년 12월 둘째 주 예정
- (4) 입찰 통보 : 발주처 입찰 위원회 개최 후 통보 예정

4. 입찰 서류 제출처

입찰 서류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.

구분	우편발송 또는 직접방문	이메일 제출
제출장소	제출용 견적서 및 기타 구비서류 봉인 후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입찰함(2층 입구에 위치)에 투입 [발송주소] (22354)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118 번길 135 인천컨테이너터미널(주) 2층 구매법무팀	발주처가 지정한 이메일 주소 (tender@psa-ict.co.kr) 로 제출
주의사항	서류는 봉인하여 회사 직인 날인 후, 테이프로 밀봉	입찰서류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단, 파일 용량이 100M 이상인 경우, 대용량 메일을 이용하여 제출

5. 구비 서류

- (1) 입찰 가격서 (별첨) 1 부
- (2) 세부 가격서 1 부
- (3)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부
- (4) 사업자등록증 1 부
- (5) 기밀 유지 서약서 (별첨) 1 부
- (6)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(별첨) 1 부

6. 주의 사항

- (1) 입찰 대상자는 입찰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, 각 페이지 마다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.
- (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에 의거하여 발주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, 입찰 대상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[안전보건관리계획서]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. [안전보건관리계획서] 미 제출 시, 업체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
No.	항 목
1	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
2	안전작업 계획(발주처가 작성한 '사전 위험성 평가' 항목을 반드시 포함)
3	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
4	안전보건교육 계획

5	사용기계/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
6	작업관련 실적, 작업자 이력/자격/경력현황
7	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

- (3)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 조건을 준수하며 입찰 결과에 어떠한 민·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.
- (4)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법무팀 김나연 차장(032-890-8908) 또는 기술팀 유동우 과장(032-890-8932)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
7. 낙찰 방법 및 통보

입찰에 응한 업체 중 발주처 기준에 의거 최적의 업체로 선정하며, 최종 낙찰자는 입찰 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합니다. (단, 선정된 업체의 입찰단가가 발주처의 시장 조사결과와 합당하지 않을 시 재입찰할 수 있음)

8. 입찰 참가 대상

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업체이며,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 조건을 준수하는 업체

9. 계약 기간

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2 개월까지

만약 계약 만료일 전에 모든 계약 제품에 대한 시험 및 납품이 완료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.

10. 기밀 유지 및 제한

- (1)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제공한 입찰 공고문, 관련 서류, 질의응답 등 모든 자료를 기밀로 취급하여야 하며, 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(2) 입찰 참여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 전환 단계에 진입하는 경우,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제공받거나 접근하게 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밀 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.
- (3) 본 입찰 절차, 기술사양, 납품물, 계약 수주 여부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없습니다. 언론 발표, 보도자료 배포, 사례 홍보 등 외부 공개 행위는 모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11. 공급업체 행동강령 준수 (The Supplier Code of Conduct)

- (1) 입찰 참여 업체는 발주처의 「공급업체 행동강령」(Supplier Code of Conduct)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며, 해당 행동강령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. 최신 버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https://service.psa-ict.co.kr/files/homePage_files/service_file/file/PSA_Supplier_Code_Of_Conduct.pdf

- (2) 「공급업체 행동강령」은 발주처의 윤리경영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, 입찰자 및 그 관련 업체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및 법적 행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(3) 입찰 참여 업체는 본인의 사업장, 자회사, 사업부, 계열사, 운영 법인, 협력업체, 공식 대리점 및/또는 하도급업체 등 발주처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관련 주체가 해당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관리/감독하여야 하며,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의 규정 또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
12. 계약 조건 (기본 사항)

- (1) 계약자는 반드시 발주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.
- (2) 계약자는 계약 제품 납품과 관련된 모든 작업에 대해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.
- (3) 계약자는 제품의 품질 또는 공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하자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,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. 또한 제품 하자 등으로 발생한 사고 ▪ 사건에 대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- (4) 계약자는 발주처에 제품 납품 및 교체 작업 완료 후, 발주처 관련 담당자에게 장비 호기당 **Service Report** (교체 전/후 공정사진 포함) 제출하고 검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- (5) 계약자는 계약 작업 완료 후 완료 순으로 발주처의 해당 부서 직원에게 검수 확인을 받고 검수 확인 일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주처에 발행합니다. 발주처는 계약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**45** 일 후 도래하는 “갑”의 지급기일(지급 기일은 매 금요일이며 이 날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로 함)에 계약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- (6) 계약자는 천재지변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일정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지체 1 일당 납품 총 금액의 **1,000** 분의 **3**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며, 이 지체상금은 발주처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될 수 있습니다.
- (7) 계약자는 발주처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 제품 납품 및 작업에 대한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.
- (8) 계약자는 본 계약의 조항, 의무, 조건 등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자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위약 벌로서 발주처에 귀속하며, 발주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13.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

- (1) 계약자는 「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」 (고용노동부 고시)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견적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- (2) 계약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공사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, 이에 따라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용합니다.

- (3) 발주처는 계약자가 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총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(4) 계약자는 발주처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 및 구비하며, 계약 완료 후 발주처에 제출합니다.

14. 보험가입

(1) 법정의무보험

계약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인력에게 요구되는 법정 보험을 반드시 가입 및 유지해야 합니다.

(2) 계약이행보증보험

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 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10%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주처에게 제출합니다. 만약 계약자의 과실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, 해당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금은 발주처에게 자동 귀속됩니다.

(3) 하자보증보험

- ① 계약자는 발주처가 납품 완료한 계약 물품에 대해 12 개월 동안 품질 보증을 해야 합니다. 품질 보증을 위해 발주처의 검수 확인 날로부터 12 개월간 총 계약금의 10%를 발주처에 무상으로 예치하거나, 이에 해당하는 동일한 금액의 하자 보증 보험 증권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 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단, 계약자는 발주처가 제시한 12 개월 품질보증기간 이상의 보증기간 제공이 가능할 경우,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합니다.
- ② 품질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제품 하자에 대하여 이를 제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, 부품, 인력을 계약자가 부담하거나,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증증권으로 보수 등 보전조치를 취합니다.

- (4)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자 종업원의 재해 및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, 더불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주처의 임직원 및 발주처와 거래하는 하도급업자, 기타 발주처에 출입하는 제 3 자 등에게 발생한 인명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.

15. 계약 해지

- (1) 계약자는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, 계약에 위배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,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(2)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서비스 지연 또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발주처는 계약서 해지조항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DY BAK / Head of Procurement